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단563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1. 6. 14. 체결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1. 6. 14. 접수 제1077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82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4. 8.경 소외 D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661,041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위 D와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288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8.경 '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2,208원 및 그 중 5,661,041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6. 9. 2.까지는 연 19%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5.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누나인 피고는 1999. 2. 19.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1. 5. 13. 접수 제8257호로 동생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14.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21. 6. 14. 접수 제10776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2021. 6. 14.경 자신의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해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제자매 중 장남인 C에게 어머니를 모시며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하여 주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C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받고 위 증여를 해제하게 된 것이다. 본래 이 사건 아파트가 C의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해제로 인하여 C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판결이 내려진 소송절차에서는 소장 부분의 송달과 변론기일의 통지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C은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회사로부터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 의뢰 예고서를 2021. 6. 9.경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22.경 위 채권추심 회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답변서(거래관계소명)’를 송부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었으나 피고가 10년 이상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며 피고가 죽기 전에 저희 집 장남인 남동생(C)에게 사실은 매매가 아닌 무상증여한 것입니다. 증여로 하려고 하니 증여세가 많이 나와 매매형식을 택하여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맹세코 단돈 10월 한 장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C이 주채무자도 아니고 보증채무에 제 아파트를 경매에 날릴 수는 없어 동생 C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요구하여 합의 하에 원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제 동생 C은 아파트를 취득할 경제적으로 능력도 없습니다.

위 모든 사실이 허위이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이고 그 액수가 다액이 아니며 이 사건 판결 당시에도 재판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C이

채권추심 회사로부터 경매신청 의뢰 예고서를 수령하기 전까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C이 경매신청 의뢰 예고서를 수령한 직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C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피고 앞으로 복귀된 경위에 관하여 채권추심 회사에 알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21. 6. 14.자 합의해제의 실질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2021. 6. 14.자 합의해제는 그 실질적인 성격이 피고가 행한 단독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C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위 합의해제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태윤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강원도 횡성군 아파트

[도로명주소]

강원도 횡성군

철근콘크리트 평스타브11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7층 49.89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강원도 횡성군 대 1332㎡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1332분의 33.312

- 이 상 -

